

폐기물처리(수집·운반) [] 신고서 [] 변경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4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고인	①상 호 (명 칭)	②사업자등록번호
	③성명(대표자)	④생년월일
	⑤주소(사업장) (전화번호:)	

⑥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법 조항	
⑦수집·운반대상 폐기물	
⑧장비 현황 (수집·운반차량 종류, 톤수, 대수)	
⑨수집·운반계획	
⑩영업개시일	

⑪변경사항	변경 전
	변경 후

⑫변경사유	
-------	--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1호 []신고
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제1호 []변경신고를
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신고의 경우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·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제출합니다) 가.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. 폐기물 수집·운반 계획서 2. 변경신고의 경우: 신고증명서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신 고 인

처 리 기 관

시·도(폐기물처리 신고업무 담당부서)

신 고 서 작 성

접 수

검 토

신고증명서 발급

결 재

